2022-10-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. 1. 16. 선고 2014고단 88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,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

창 원 지 방 법 원 통 영 지 원

판 결

사건 2014고단8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 음란), 아동·청소

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(음란물 제작·배포등)

피고인 1. A

2.B

검사 박한나(기소), 윤원일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C(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)

판결선고 2015. 1. 16.

# 주 문

#### 1. 피고인 A

피고인을 벌금 5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게 32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# 2. 피고인 B

피고인을 벌금 5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# 이 유

범죄사실

### 1. 피고인 A

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닉네임 'A'으로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닉네임이 'D'인 피해자  $E(\phi, 13M)$ 의 카카오 톡 계정을 알아냈다.

가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피고인은 2014. 5. 4. 12:0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라3차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,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"E이 상상하며 자위해야겠는걸?", "오빠 자지를그 아이스크림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빨아주 면 오빠도 E이 보지 맛있게 빨아주지", "E이 가슴보구 자위하려궁", "오빠 자지 만지고 빨고, 박고 싶지 않아?"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. 22:4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영상(피고인의 성기 사진)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나. 아동·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

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,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전부또는 일부 노출되어 있는 사진 8장을 전송받고, 위 사진들이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.

### 2. 피고인 B

피고인은 트위터에서 닉네임 'G'로 접속하여 활동하던 중 닉네임이 'D'인 피해자 E(여, 13세)의 카카오톡 계정을 알아내었다.

가.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피고인은 2014. 4. 28. 23:00경 거제시 H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,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"보지귀여워~~ 셀 카모드로더멀리서똥꼬니오게찍지~", "보지에넣어보고아프면빼줄게", "좆물싸줄게상으루 능"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. 16: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나.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

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,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나 성기가 전부 또는 일부 노출되어 있는 사진 5장을 전송받고, 위 사진들이 아동·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
- 1. I,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- 1. A과 카카오톡 대화내역, G와 트윗으로 대화한 쪽지내역 및 주고 받은 사진
- 1. 각 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(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), 각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(음란물소지의 점), 각 벌금형 선택 (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을 불리한

2022-10-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양형사유로 고려하고,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,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며, 피고인들의 각 연령, 범행 동기 및 범행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)

- 1. 경합범가중
- 각 형법 제37조 전단, 제38조 제1항 제2호, 제50조
- 1. 노역장유치
- 각 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- 1. 이수명령
-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
- 1. 가납명령
-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신상정보등록

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,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,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

피고인들의 각 연령, 직업, 범죄전력, 재범의 위험성, 이 사건 범행의 동기, 과정, 결과 및 죄의 경중, 공개명 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,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, 피해자 보호 효과,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.

### 판사 이재홍